

광양터미널 기간제 인건비 보충 자료

○ 기본 개념

터미널 매표관리원은 시급제임. 3조 2교대로,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함.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1주일 소정근로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고,
1주일 소정근로일 40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무시간/40시간 * 1일분 임금] 의 형태로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
즉,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80,240원이고
1주일에 4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64,192원임.

주휴 계산과 주40시간 근무 계산을 위한 1주의 기준은 월~일이며,
전달의 마지막 주와 이번달의 첫주는 합산해서 이번달 급여로 지급함.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주휴수당과 주40시간 근무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주' 개념과,
4일근무 2일휴무(1일 유급, 1일 무급)로 이뤄지는 6일단위 근무사이클임.
근무사이클은 3인으로 2교대 근무를 돌리기 위한 근무순서일 뿐이며,
주휴수당이나 주40시간 개념과 섞이기 시작하면 정말 헷갈리니까 두 개는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정리해야 함.

교대근무제와 주5일 근무제의 차이도 이해해야 함.

주5일 근무제는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고정시키는 근무형태이며
교대근무제는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근무표에 따라서 근무일과 휴무일이 정해지는 근무형태임.
그렇기 때문에 주말과는 정말 크게 관계가 없음. 주말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편함.

주휴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일(예정된 근로일=월초에 정한 근무표)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간 상호대직 사항은 주휴수당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음.

근무표에 따른 근무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평일, 주말 관계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

(주5일 통상 근무자가 아니므로, 근무표가 우선.)

이것은 대체공휴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이 사항은 기존 터미널 운영 매뉴얼에는 잘못 적혀있는 내용으로, 정정이 필요함.

이외에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체육과에서 교대근무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체육과에 문의해서 기준을 통일시키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통상 임금 계산

◆ 필요한 파일(준비사항)

- (엑셀) 광양버스터미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지급
- (엑셀) --년 -월 고용산재 내역 - 총무과 인사팀 기간제 담당자가 15~20일경 송부
- (고지서) 건강, 연금보험료 고지서(합산보험료고지서 및 건강보험료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팩스로 송부 요청

◆ 입금(지출)할 내역

- 근로자 급여 - 공제금액을 제한 실수령액을 근로자 계좌로 입금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에 근거 계좌이체로 납부)
 - 세입세출외(소득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 세입세출외(고용, 산재보험) - 고용, 산재보험 납부
- ⇒ 건강·연금보험료는 부서에서 직접 집행, 소득세·고용산재는 총무과에서 한번에 납부하므로 위와같이 처리함

◆ 처리절차

1. 월초에 터미널 근무표, 인부사역결재부 결재. 근무일지 매일 작성
2. [근무표 정리] 월말쯤 되어 소장으로부터 근무상황부가 오면 근무상황부를 대조해 상호대직을 확인해서 변경된 근무표를 작성. 이 과정에서 월초에 없었던 대체휴일이 생겼으면 체크.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로 계산하지만, 기본급/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은 실제근무일로 계산하기 때문임)
3. [주휴수당 계산] 월초에 결재받은 당초 근무표에, 전월 마지막주 근무표(역시 당초 결재받은 근무표)를 합치기 (전월 마지막 월요일부터~말일까지)

2023 광양버스터미널 근무표(3월)										
일자	운영관리	매표실		휴무	비고					
		06:00~15:00	13:00~22:00			정갑준	조정혜	정맹선	백효임	정갑준
2.27(월)	정갑준	백효임	정맹선	조정혜		1주차	5일	4일	5일	5일
2.28(화)	정갑준	백효임	정맹선	조정혜		2주차	5일	4일	5일	5일
3.1(수)	정갑준	조정혜	정맹선	백효임	휴일근로	3주차	5일	5일	5일	4일
3.2(목)	정갑준	조정혜	정맹선	백효임		4주차	5일	5일	5일	4일
3.3(금)	정갑준	조정혜	백효임	정맹선						
3.4(토)		조정혜	백효임	정갑준,정맹선						
3.5(일)		정맹선	백효임	정갑준,조정혜		정갑준	조정혜	정맹선	백효임	
3.6(월)	정갑준	정맹선	백효임	조정혜		주5일	4주	2주	4주	2주
3.7(화)	정갑준	정맹선	조정혜	백효임		주4일		2주		2주
3.8(수)	정갑준	정맹선	조정혜	백효임						
3.9(목)	정갑준	백승이	조정혜	정맹선						

(↑전월 마지막주 월요일인 2.27.(월)부터 말일인 2.28.(화)까지 내역을 붙여준 뒤, 개인별로 1주간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모습)

4. [주휴수당 계산] 각 근로자별로 1주일간 며칠을 근로했는지 체크해서, 각자 5일 근무한 주, 4일 근무한 주가 몇주인지 세기

"인건비 지급내역" 엑셀의 "4일근무 주휴일수", "5일근무 주휴일수"에 적어주면 주휴수당이 계산된다.

※ 연차휴가, 특별휴가 등 법정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므로, 주휴 계산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봄. 출근일수에 포함하는 것과 동일.

5. [기본급 계산]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날짜를 개인별로 세서 “인건비 지급내역” 엑셀의 “근무일수”에 기재한다.
6. [추가수당 계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근무날짜를 개인별로 세서 “인건비 지급내역” 엑셀의 “휴일근로근무일수”에 기재한다.
7. [4대보험] 다음과 같이 입력 (그림자료에 번호로 표시)

번호(그림)	금액 출처(파일)	파일 내 위치	인건비 지급내역 엑셀
1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건강-사용자부담	AD열(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사업자부담)
2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건강-가입자부담	AE열(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본인부담)
3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요양-사용자부담	AG열(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사업자부담)
4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요양-가입자부담	AH열(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본인부담)
5	고용산재 내역	AB열(고용보험(사업자계))	AN열(고용보험-사업자부담)
6	고용산재 내역	AA열(고용보험(근로자계))	AO열(고용보험-본인부담)
7	고용산재 내역	AD열(산재보험(입금총액))	AL열(산재보험-사업자부담금)
8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사용자부담금	AJ열(국민연금-사업자부담)
9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근로자기여금	AK열(국민연금-본인부담)

8. [원천징수] 소득세계산기 사이트를 사용해서 입력. “인건비 지급내역” 엑셀의 AA열(지급액) 값을 “월급액”란에 입력하고, “계산” 눌러서 나온 “100% 선택”의 금액으로 AT열(원천징수-소득세), AU열(원천징수-지방소득세) 입력

[소득세계산기](https://incometax.calculate.co.kr/earned-income-tax-calculator#google_vignette)

9.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작성]

인건비 지급내역 엑셀	세입세출외납부서 엑셀
AM열(고용보험-소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전일) 시트
AL열(산재보험-사업자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전일) 시트
AT열(원천징수-소득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 시트
AU열(원천징수-지방소득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시트

10. [입금품 입력]

입금품	인건비 지급내역 엑셀
근로자 개인	AW열(인건비 실수령액)
국민건강보험	AB6셀 + AI6셀
세입세출외(소득세,지방소득세)	AS6셀
세입세출외(고용,산재보험)	AL6셀 + AM6셀

그림자료 (7번 관련)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본 운영·시설관리 및 매표업무] 단위사업장: 000							출 력 자 : 210932	출 력 일 : 2023.03.22	페이지 : 1 / 1
보험	산정보험료 강면보험료	수시정산 가입자분할	연말정산 퇴직/중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기자회계	2 번 1 번 4 번 3 번	보험료총액		
.010,580	건강 0	71,270 0	0 0	71,270 71,270	0 0	0 000	142,540 80,390		
요양 0	9,120 0	0 0	0 0	9,120 9,120	0 0	0 0	18,240 160,780		

U	V	W	X	Y	Z	AA	AB
보험료합계(①+②+③)			6번	5번	7번		
업급여 허름	사업기본 업급여 허름	사업기본 안직능 허름	합계	고용보험 (근로자 ▼)	고용보험 (사업자 ▼)	고용보험 (입금총 ▼)	산재보험 (총계 ▼)
110	19,110	18,040	56,260	19,110	37,150	56,260	18,660
110	19,110	18,040	56,260	19,110	37,150	56,260	18,660
090	18,090	17,080	53,260	18,090	35,170	53,260	17,670
090	18,090	17,080	53,260	18,090	35,170	53,260	17,670
090	18,090	17,080	53,260	18,090	35,170	53,260	17,670
090	18,090	17,080	53,260	18,090	35,170	53,260	17,670

2023년 03월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 직인 생략 -

사업장 기본사항	광양시성교동과 광양버스터미널 운영·시설관리 및 매표업무		
사업장관리번호	920-23-69205-1	사업장 명칭	

연금보험료 징수내역			납부된 금액 (B)	납부할 금액(C) (C=A-B)	보험료지원금	기 타
해당년월 계	최초 납부할 금액 (A) 723,600	0	723,600	계 0	당월차감 0	
연금보험료 연체금	723,600 0	0	723,600 0	전월분 0	전월차감 0	
소급분분할구분	미반영			이월분 0	과다납액 0	
				정산구분	미납	

⑤ 최초 납부할 금액(A)=[연금보험료 결정대상자①+소급분 연금보험료대상자②]-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③-이메일고지감액 200원

연금보험료 결정대상자 ①			9번	8번		
순번	성명	생년	연금보험료	근로자기여금	사용자부담금	비 고
1	조*혜	63년	180,900	90,450	90,450	
2	백*임	67년	180,900	90,450	90,450	
3			180,900	90,450	90,450	

○ 대근 처리

기존에 근무하기로 한 근무자가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등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여 휴무일인 근로자가 대근한 경우

주52시간 상한 내에서 대근이 이뤄지도록 조치 (1주의 기준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인 것에 유의)

휴무한 직원의 주휴수당 ⇒ 법정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성격이므로, 주휴계산시 출근한 걸로 보면됨.

대근한 사람의 수당처리 ⇒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대근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에 더해서,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50%) 지급.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주 40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무급휴일에 대근 처리하는 일은 잘 없을것임, 왜냐면

매표관리원 근로계약서상 1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4일 근무 2일 휴무(1일 유급, 1일 무급)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일 휴무일 중에서 어느 날이 유급휴일이고 어느 날이 무급휴일인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유급주휴일에 근무한것으로 처리(휴일근로수당 지급)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음.

(주5일 근무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교대근무자는 유급주휴와 무급주휴 일을 정하지 않았음)

그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연달아서 대근할 경우 ⇒ 이 경우는 주52시간 상한제에 걸리지 않게 유의해야 함. 그렇다면 주 최대 6일(48시간)을 근무할 수 있음. 그렇다면 대근 1일차는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 1.5배가 되는 것이고, 대근2일차는 주40시간을 초과해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1.5배가 됨.

즉,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휴무일에 대근을 할 경우는 무조건 1.5배를 쳐주면 되는것임.

만약 이날이 공휴일이라면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추가함. 통상임금(100%)+연장근로수당(50%)+휴일근로수당(50%)=200%

⇒ 고용노동부의 현행 행정해석상,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을 하지 않음.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도록 되어있음(근로기준법 제56조)

⇒ 이것에 따르면, 40시간을 초과하여 유급휴일에 8시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100%)+휴일근로수당(50%)이고 40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일에 8시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100%)+연장근로수당(50%)임
판례가 계속 변해왔고, 고용노동부 해석과 하급심 판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것과도 불일치해서 뭐가 맞는지 잘 판단이 안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다시 질의해보겠음

⇒ 질의결과(답변원본 스크린샷으로 첨부)

연장, 휴일은 중복가산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참고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공휴일, 노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휴일

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정말 피치못한 사정으로 근로자가 오래 휴무하게 되어 나머지 근로자들이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면??
⇒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특별연장근로같은건 요건도 정해져있고, 고용노동부 승인이 필요함) 실무적으로는,
대근자와 사전 협의하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대근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 가능성성이 높음.

근데그러면안되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해보자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 행정해석 문의]

홈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상담

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주40시간 근무후 유급휴일에 추가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지급되나요? 행정해석 변경이 많아서 찾기가 어렵네요.. 최근 해석 제공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5.01.09	공개여부	공개
답변	<p>연장, 휴일은 중복가산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p> <p>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p> <p>참고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공휴일, 노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휴일의 근로를 의미합니다.</p>		